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현정 의원)

의안 번호	33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1년 03월 03일

발 의 자: 심현정 의원

찬 성 자: 박찬원, 장문혁, 이명순의원

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,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자 조건에서 “신청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”을 “군에 주소를 둔”으로 변경함으로써 지급대상기준을 완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.(안 제3조)
- 나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(제5조, 제18조)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조성 마련과 시책수립 의무에 따른 명절 보훈위문금품 지원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 : 2021. 02. 08. ~ 2021. 02. 28.(20일간), 제출된 의견 없음
 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1. 01. 26. ~ 2021. 02. 01., 아래 참조.

조 례 안	제3조 중 “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 한”을 “주소를 둔”으로 한다. (⇒ “거주기간 조건 1년” 삭제)
제 출 의 견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복지정책과 - 기존조례 유지</p> <p>· 신청대상일 기준 평창관내 주소를 둔 대상자가 수당 신청하여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할 경우, 주소지만 옮겨 지원금만 받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함.</p>
의 회 의 견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불 수 용]</p> <p>강원도 내 지자체들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최소 월 10만원에서 15만원, 평창은 20만원, 철원은 30만원 지급으로 14개 시·군이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 <u>다만, 주소를 두고 “거주기간 조건”을 둔 곳은 단 2곳, “횡성 6개월” “평창 1년”으로</u> <u>기존대로라면</u> 정선군에서 15만원 수당을 받던 국가보훈대상자가 평창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<u>거주기간 조건에 따라 1년 동안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</u> 국가보훈대상자는 단지 평창군 전입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됨. <u>거주기간 조건이 없는 다른 수당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고려해야</u> <u>할 것이며, 국가차원의 보훈대상자를 예우하여 드리는 수당이니 만큼</u> “거주기간 조건 1년”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봄</p>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신청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”을 “군에 주소

소를 둔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 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<u>신청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 을 두고 1년이 경과한</u>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.</p> <p>제8조(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 금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----- ----- <u>군에 주소를 둔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8조(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 금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호국보훈 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[관련법령]

국가보훈 기본법

제2조(기본이념)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,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(예우 및 지원의 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3조 중 “지원대상자는 신청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”을 “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4